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
(시설급여)

공정거래위원회
표준약관 제10068호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요양원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 약 당 사 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	등 급 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
	주 소			
	자 격	☐ 일반 ☐ 경감대상자(8%) ☐ 경감대상자(12%)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제주요양원	시설종류	노인요양시설
	시설장	제주요양원장 김성희 (인)	연락처	064-747-8338~9
	주 소	제주시 장군내길 68-1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 의 ( 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 주 요 양 원

제1조 【 목 적 】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'을'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 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 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 '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 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
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⑥ '갑' 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① '갑' 의 매월 이용료는 이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.

② '갑' (또는 '병')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'갑'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'제공자' 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'갑' 또는 '병'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 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

(2025년 수가 기준 요양보호사 2..1명 1명 /1일당/단위:원)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급여비용	노인요양시설	90,450	83,910	79,240
비급여	상급 침실 이용료 (1인실)	100,000		
	식재료비(1식)	3,200		
	간식비(1일)	1,500		
	이/미용료등	-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◇ 수급자 자격별 본인 부담 비율

구 분	시설급여
일 반	20%
기초수급권자	0%
40% 감경대상자	12%
60%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	8%

◇ 본인부담금 세부내역(30일 기준)

등급	일반 (20%)	비급여	합계	감경 (12%)	비급여	합계	감경 (8%)	비급여	합계
1등급	542,700	333,000	875,700	325,620	333,000	658,620	217,080	333,000	550,080
2등급	503,460	333,000	836,460	302,070	333,000	635,070	201,380	333,000	534,380
3~5 등급	475,440	333,000	808,440	285,260	333,000	618,260	190,170	333,000	523,170

※ 촉탁의 진료(월 2회)비 및 외부 병원 이용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진료비, 약제비)은 별도 부담임.

※ 비위관 삽입 어르신의 경우 식재료비는 부담하지 않음.

◇ 계약의사(촉탁의) 진료비(월 최대 2회) 본인부담금 세부내역

(2025년 수가 기준/단위:원)

구 분	본인부담금			
	일반	경감 12%	경감 8%	기초생활수급자
초진 비용(회당) 18,410	3,680	2,200	1,470	0
재진 비용(회당) 13,160	2,630	1,570	1,050	0
총계	6,310	3,770	2,520	0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가 비용 납부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 '갑' 과 '을' 그리고 '병'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'갑' 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'을' 의 의무

1. '갑' 의 건강관리 협조
2. '갑' 의 신변이상을 '병'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'갑'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'병' 의 의무

1. '갑'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및 기타 실비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'갑'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 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'갑' 의 해지

1. '갑' 과 '병'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'을' 의 해지

1. '갑'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'이용자' 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
4. '갑'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을' 은 '갑'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'갑' 또는 '병'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5. '이용자' 와 '대리인 또는 보호자' 가 제주요양원 직원에게 폭행·폭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·신체적 위해 행위를 가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때

제6조 【 퇴소 】

① '을' 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'갑' 과 '병'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 에게 제출하고 '을'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퇴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대리인 또는 보호자' (또는 '이용자')에게 통보한 후 '제공자' 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이용자' 또는 '대리인 또는 보호자'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③ '갑' 과 '병' 은 퇴소 시 이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 【 입소물품 】 '갑' 은 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 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① '갑' 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17:30까지로 한다.
(단, '갑' 과 '을' 또는 '병' 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
② '갑' 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'을'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'을' 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 이나 '병' 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 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④ 외출·외박 중 '갑' 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 은 '을'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 【 시설관리 】

① '을' 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'을' 은 요양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① '을' 은 '갑'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 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'갑' 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 에게 별도 청구한다.

④ '을' 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⑤ '을'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⑥ '을' 은 '갑' 이 촉탁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없이 '병' 에게 통보한다.

⑦ '을' 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⑧ '갑' 이 장기간 병원 입원 후 요양원으로 복귀 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해 증상이 없거나 관련 증상이 없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'을'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① '갑' 은 '을' 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 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
② '갑' 또는 '병' 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 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 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① '을' 은 '갑'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119(또는 112)에 연락 및 협약병원, '갑' 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'병'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'이용자' 또는 '대리인 또는 보호자' 가 부담한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 '갑' 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】

① '을' 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 에게 제공하며, '갑'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비위관 삽입 어르신의 경우 식재료비를 수납하지 않고, 비위관 영양제를 보호자가 별도 구입하여 제공함.

③ '을'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침실의 배정 】 '갑'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 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 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 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① '을' 은 '갑'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'을'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③ '갑'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
④ '갑' 은 '을' 이 수집 ·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⑤ '을' 은 '갑'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 은 '갑'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 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은 '을'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2. '을'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'갑'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'갑'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5. '갑' 의 질병(치매, 중풍, 편마비, 거동불안, 감염, 욕창 등) 사유로 시설 종사자의 케어 및 촉탁의사 지시를 거부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제20조(준용)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 년 월 일

(계약자) '갑' 이용자 (인)

'을' 시설장 제주요양원장 김 성 희 (인)

'병' 대리인(보호자) (인)